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2003. 2월 개인건축주에게 공장신축 철골공사에 대하여 연면적 120평, 도급금액 72,000,000원에 원수급 받았으나, 동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2건으로 나누어 (02. 12. 30일: 194.0㎡, 02. 12. 31일: 193.5㎡) 허가를 득 하였으며, 공사장소는 하나의 지번(○○시 ○○동 ○○번지)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착공신고 필증은 각각의 허가에 대하여 2건 모두 2003. 2월 교부받았고, 도급받은 전체 면적에 대하여 2003. 2. 15일 실착공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체 원수급받은 연면적 120평, 도급금액 72,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인지, 아니면 건축허가서상 각각의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330㎡ 미만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공사 외의 기타 건설공사는 총공사금 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당연 적용됩니다.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장신축 철골공사의 경우 질의서의 계약내용으로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보이나, 동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31-877-7582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문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주택의 방 2칸 중 1 칸을 월세 1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甲은 처음 두 달간만 제 때에 월세를 내고는 그 후로 집을 나가 연락도 없습니다, 甲의 가재도구는 방안에 들여놓은 채 자물쇠로 문을 채워 버렸는데, 지금 저의 심정은 월세를 받지 못해도 좋으니 그들에게 방을 비우게 하고 새로 세를 놓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지요?

A 답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행방불명 등으로 2개월 분의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18조 제640조 대법원 1994.9.9. 94다4417).

이 경우 계약의 해지는 일반적인 계약해지와 달리 임차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주택임차인이 두 달 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내지 않은 이상 계약해지의 요건이 되며 (대법원 1977.6.28. 77다402),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부분을 입증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방법을 제기하여야 하며,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 사유가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새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 공시송달에 의한 가옥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가옥명도절차를 법원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임차인의 가재도구를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하든가 임차인소유의 물건을 법원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34조 제488조 대법원 1962.10.11. 62다496). 공탁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물건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90조).

문의: 031-874-1652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한방3과장 반사평

추운 날씨에 많이 오는 구안와사 중풍과 감별해야 합니다

얼굴 부위의 와서풍 흔히들 구안와사 혹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로 가을, 겨울철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구안와사는 중추성과 말초성 으로 나누는데 입이 돌아갔다고 전부 중풍이 온 것은 아니다.

먼저 병이 중추성인 중풍인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인지는 이마의 주름으로 감별할 수 있다.

이마 및 눈 주위 근육은 양쪽 대뇌로부터 함께 신경지배 를 받으므로 중풍은 이마에 주름을 만들 수 있고 눈도 감을 수 있다.

말초형 마비는 안면근육이 늘어지는 이완형의 마비가 오며, 완전한 말초신경마비에서는 눈을 감을 수 없고 이마에 주름을 만들 수 없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또 한쪽 입이 처지고 여러 표정을 만들 수 없고 침을 흘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다.

말초성 구안와사는 간혹 귀 뒷부분에 쑤시는 통증이 오는데 이는 안면신경이 나오는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것이고 염증으로 마비가 오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심하면 후각과 미각에도 마비가 와서 둔해지는 경우가 있다.

@중추성과 말초성의 감별법@

말초성 구안와사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에 침범한 것과 신경주위 종양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물고 원인을 모르는 포괄적인 말초성안면마비가 대부분이다.

한의학에서는 주로 몸이 풍한(風寒)과 칠정(七情)에 손상되거나 기혈(氣血)과 비위(脾胃)기능의 이상으로 나타난다. 흔히 겨울철 자녀들 졸업식장에 갔다 오니 입이 돌아갔다는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과음 후 찬 곳에서 자고 나서, 각종 스트레스와 소화장애 로 발생하여 병원에 찾는 경우가 많다.

중추성 (중풍, 뇌혈관질환)	말초성 (와사풍, 말초신경마비)
이마주름이 유지됨	환측의 이마주름이 소실됨. 눈을 치뜨면 이마주름이 없음
눈꺼풀은 정상	환측의 눈이 감기지 않고, 눈썹도 치켜떠지지 않음
입이 약간 돌아감	입이 심하게 돌아감(입이 "오"모양이 안됨)
미각, 청각장애 없음	미각, 후각, 청각의 과민 혹은 둔함
뇌혈관병변의 증상 수반	귀 뒤가 쑤시면서 아픈 경우가 있다

문의: 의정부한방병원 031-820-7200

☞다음호에 계속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소장 이문환

Q 결혼을 앞둔 남성입니다. 결혼 할 대상만큼은 반드시 처녀성을 간직한 여성이길 바라고 있지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고민입니다.

처녀막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조언을 바랍니다.

A 안녕하세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생활이 현대화되고 유니섹스라는 말이 생길만큼 남성, 여성 구분이 어려운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포츠며, 취미생활이며 더구나 요즘엔 몸짱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 다이어트 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생긴 각종 요법들이 실행되고 있는 즈음, 20대에서부터 폐경이 생기고 있다는 보고가 심심찮게 매스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녀막 손상은 아주 보편적인 일이 되었지요.

수영을 심하게 해도, 삽입용 생리대사용시에도, 자전거를 타도, 심한 운동에도 ..등등 수없이 처녀막손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마다 처녀막의 생김이 달라서 어떤 이는 출산 시에 처녀막이 파열되기도 한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처녀막파열시 혈액이 많을 수도, 아주 경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처녀막은 그 구조가 여러 개의 주머니로 되어있기도 하고, 오로지 하나의 모양만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개의 주머니 중 하나가 약하게 먼저 터질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 개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녀막보다 더 중요한 서로간의 신뢰가 없다면 누구와도 결혼생활의 지속이 매우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자분을 사랑하면서도, 또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의 갈등이 심하시다면 선생님이 집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포천가족·성 상담센터 031-542-3171

의·학·상·식

포천의료원 안과 과장 신제원

건강한 사람의 눈에는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있는데 이 수정체가 투명하여 빛이 잘 통과되므로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혀 물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 광선이 잘 들어가지 못하고 이로 인채 시력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눈 속의 수정체가 혼탁이 되어 생기는 것으로서 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노인성 백내장이 대부분이며,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백내장 환자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백내장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는 수도 있고, 당뇨병과 같은 전신질환 또는 눈을 다쳐서 생기기도 합니다.

눈 속의 질환에 의해서 속발성으로 백내장이 생기기도 하는데 녹내장, 망막질환, 포도막염 등으로 해서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Steroid 점안액이나, 다른 신체질환으로 내복약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시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증상은 서서히 진행하는 시력감퇴이며, 이때 한쪽 눈은 정상이고 다른 쪽 눈이 백내장이 있을 때는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도 시력감소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통증은 전혀 없으며, 특히 초기에도 밝은 곳에서 시력이 더 떨어지고 실내나 약간 어두운 곳에서 더 잘 보이는 주맹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백내장은 일단 발생하면 결국 수술로서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유해산소로 인한 수정체의 누적된 손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젊어서부터 햇빛에서 선글라스 착용을 습관화하여 자외선을 차단하고, 황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야채, 과일 등을 포함하여 균형 있는 식생활이 백내장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의: 포천의료원 031-539-9114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주택의 방 2칸 중 1 칸을 월세 1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甲은 처음 두 달간만 제 때에 월세를 내고는 그 후로 집을 나가 연락도 없습니다.

甲의 가재도구는 방안에 들여놓은 채 자물쇠로 문을 채워 버렸는데, 지금 저의 심정은 월세를 받지 못해도 좋으니 그들에게 방을 비우게 하고 새로 세를 놓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지요?

A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행방불명 등으로 2개월 분의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18조 제640조 대법원 1994.9.9. 94다4417).

이 경우 계약의 해지는 일반적인 계약해지와 달리 임차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주택임차인이 두 달 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내지 않은 이상 계약해지의 요건이 되며 (대법원 1977.6.28. 77다402),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부분을 입증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방법을 제기하여야 하며,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 사유가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 공시송달에 의한 가옥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가옥명도절차를 법원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임차인의 가재도구를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하든가 임차인소유의 물건을 법원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공인회계사 송관수 02-404-9944

뼈속까지 좋아지는

혈 도 마 사 지

다른 곳에서 못고친병 확실히 고쳐드립니다

◆ 목, 머리, 팔, 다리, 어깨, 허리, 복부, 손발, 얼굴, 가슴, 정력, 항문, 골반 전문

◆ 중풍, 오십견,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다리관절염, 복부비만 전문

영업시간 : 월~일 6:00~24:00 요 금 : 1시간 3만원

Tel: 031) 542-7196/ 019-9727-7196 /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상운아파트 101동 203호